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0 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재원·서왕진·정춘생

서영석 · 강경숙 · 김선민

박 정・조 국・김준형

신장식 • 황운하 • 민형배

박지원 · 정성호 · 이상식

이해민 • 이용선 • 차규근

이성윤 • 박은정 • 김윤덕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·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, 예술사업자 등이 시 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 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불공정행위로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)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 롱·성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.
- 제34조의2(과징금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 공정행위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지정 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, 예술지원기관 및 예

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,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

행 이후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2조의2(감사원에 대한 감사요
	구)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
	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
	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
	<u>활동 관련 성희롱·성폭력행위</u>
	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
	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
	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
	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.
	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
	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
	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
	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
	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
	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
	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
	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
	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과징금) ① 문화체육관
	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

의 불공정행위(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 정명령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 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기관등,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 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 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,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

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<단서 신설>
- 2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	에
따라 징수한다.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	<u>규</u>
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	<u>차</u>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	<u>٥</u>
로 정한다.	
41조(과태료) ①	
<u>.</u>	
1	
다만, ㅊ	13
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	ㅡ 처
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	
2. (현행과 같음)	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